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'96. 5. 16

나. 회부일자 : '96. 5. 16

3. 제안이유

- 재난관리상황실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동 상황실에 근무할 인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본청의 정원 4명을 증원 : 6급 2명, 7급 2명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,

이는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난관리상황실 근무요원의 확보를 하기 위한 것으로

그 주요골자로는

본청에 6급 2명, 7급 2명을 증원, 본청 정원의 총수를 941명에서 945명으로 하여, 지역재난상황의 24시간 종합관리 및 상황관리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해 전담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